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3. 개정이유

· 농촌 지방개량 사업 및 농촌주택 사업중 시범사업으로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에
용자하였던 자금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와 자금의 용자신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4. 주요골자

농촌 지방개량사업 자체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변소개량 용자금 지원사업, 간이 태양열 이용시설등 삭제와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신설
자금의 용자 신청시 현실에 맞게 관서 조정

5. 검토의견

농촌 지붕개량 사업 및 농촌주택 사업중 시범사업의 용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등
태양열등의 이용시설 삭제와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하여 일반회계를 준용
하여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하였던 것을 등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부서의
회계관직 공무원 관직지정을 신설하고 자금의 용자신청등의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
하기 위하여 기 능협으로 대여 되어 있는 자금의 용자 신청자의 적부등을 실질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해당 시장, 군수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